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동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
번 호 19452

발의연월일 : 2019. 3. 29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·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를 둘 수 있고,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.

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근거조항이 존재하고,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부재함.

이에 개정안에서는 학예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,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·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

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.

한편,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‘국가전문자격증 대여·알선 행위 제재 강화(제2018-507호)’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것임(안 제6조의2 신설 등).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전단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자격취소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2.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

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
여한 경우